

독서장애인 조약 개요

**a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
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
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**

역사

- 1981 WIPO, UNESCO 시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
- 1985 Wanda Noel 보고서 : 국경간 저작물 교환의 필요성 등 주요 이슈 제시
- 2001 WBU David mann "WIPO: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증진" 발표
- 2004 브라질 , 아르헨티나 WIPO 개발 의제 제안
- 2005.5 지식접근권조약 (A2K treaty) 제안
- 2006.12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
- 2007.9 WIPO 총회 ,WIPO " 개발 의제 " 구현을 위한 45개 권고안 채택

역사

- 2008.11 SCCR17, WBU, '맹인, 시각장애 및 다른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 증진을 위한 WIPO 조약' 제안
- 2009.5.25 브라질, 에쿠아도르, 파라과이, WIPO SCCR 18에 독서장애인 조약 공식 제안서 제출.
- 2010.6 SCCR 20 - 미국, EU, African Group의 제안 (WBU 제안을 포함하여 총 4개 제안)
- 2011.6 SCCR 22 - 개도국, 선진국 공동으로 제안서 제출
- 2012.12.18 WIPO 특별 총회, 2013년 6월 외교회의 (6.17-28, 마라케쉬)에서 독서장애인 '조약'을 채택하기로 합의

초안 개요

- 시각장애인 / 독서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 기구 / 조약의 초안문서
 - 서문 : 12개 문장
 - A 조 정의 : 저작물,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, 선진국에서의 합리적인 가격, 개발도상국에서의 합리적인 가격, 승인된 기관
 - B 조 수혜자
 - Bbis 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
 - C 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에 관한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
 - D 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교환
 - E 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의 수입
 - Ebis 조 (3-step test)
 - F 조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
 - G 조 계약과의 관계 : 삭제
 - H 조 프라이버시의 존중
 - I 조 3단계 테스트의 해석
 - J 조 국경을 넘어서는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
 - "적용 원칙"에 대한 묶음 패키지

초안 개요

- 외교회의 검토를 위한 조약의 행정적 조항과 최종 조항 초안

- ... 조 : 총회
- ... 조 : 국제사무국
- ... 조 : 조약 가입 자격
- ... 조 : 조약 하의 권리와 의무
- ... 조 : 조약의 서명
- ... 조 : 조약의 발효
- ... 조 : 조약 가입의 발효일
- ... 조 : 조약의 철회
- ... 조 : 조약의 언어
- ... 조 : 보관소

-

-

-

저작물

베른협정 2.1 항의 의미 내에서의, 텍스트, 기호, 그리고 / 혹은 삽화 형태의, 출판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된, 문학적, 예술적 저작물을 의미한다.

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

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방식 혹은 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본을 의미한다. **시각장애 / 독서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실행가능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.** 접근가능한 포맷 복제본은 수혜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용되며, 원 저작물의 완전성을 존중하되, 저작물을 대안적인 포맷으로 접근가능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변경이나 수혜자의 접근성 요구를 적절하게 고려한다.

승인된 기관

승인된 기관은 **비영리적으로** 수혜자에게 교육, 훈련, 적응적 독서 혹은 정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허가되거나 인정된 기관을 의미한다. 또한 **정부 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로서 자신의 주요 활동 혹은 기관의 의무의 하나로 수혜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**을 포함한다.

승인된 기관을 아래와 같은 관행을 수립하고 따라야 한다.

- i)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은 수혜자여야 한다.;
- ii)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배포와 이용을 수혜자 그리고 / 혹은 승인된 기관으로 제한한다.;
- iii) 허가되지 않은 복제본의 복제, 배포 및 이용을 막는다.;
- iv) H 조에 따라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, 저작물 복제본에 대한 적절한 관리, 기록, 처리를 유지한다.

수혜자

수혜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이다 .

(a) 맹인

(b) 시각장애 혹은 인지 혹은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, 그러한 장애 (**impairment or disability**) 가 없는 사람과 상당히 동등한 정도로 시각적 능력이 향상될 수 없고, 그래서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상당히 같은 정도로 인쇄된 저작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

(c) 신체적 장애 때문에 책을 잡거나 조작할 수 없거나, 정상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.

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에 관한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

2. 회원국/체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자국 저작권법 상 예외 혹은 제한을 둬으로써, 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 C(1)조를 실현할 수 있다.

(A)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제작하고, 다른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입수하고, 그 복제본을 (비영리적 대여, 혹은 유무선 수단을 이용한 전자적 통신을 포함하여) 모든 수단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고,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떠한 중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.

1.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승인된 기관은 해당 저작물 혹은 그 복제본에 합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.
2. 저작물은 접근가능한 복제물로 변환된다. 이는 접근가능한 포맷에서 정보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.
3.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복제본은 수혜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한다.
4. 이러한 활동은 비영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.

(B) 수혜자가 해당 저작물 혹은 그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했을 경우, 수혜자, 혹은 주요 보호자나 간병인 등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은 수혜자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고, 혹은 수혜자가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.

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에 관한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

4. [회원국 / 체약당사국은 이 조항 하의 제한과 예외를 해당 시장에서 수혜자를 위한 합리적인 조건 하에 상업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, 특정한 접근가능한 포맷의, 출판된 저작물로 **한정할 수 있다.**]

5. 이 조항에서 언급된 예외와 제한이 보상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자국 법에서 결정할 문제이다.

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

2. 회원국 / 체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자국 저작권법에 예외와 제한을 둬으로써 D(1)조를 실현할 수 있다.

(A) 승인된 기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**다른 회원국 / 체약당사국 내의 (승인된 기관인) 기관이나 단체**에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수혜자의 배타적인 이용을 위해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.

[(B) 승인된 기관이 A조에 따라, 권리자의 허락없이 다른 회원국 / 체약당사국 내의 **수혜자에게**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.]

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

3. 대안 A: [회원국 / 체약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배포 및 이용제 공을, 수입 국가에서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없는 출판된 저작물로 제한할 수 있다.]

4. 대안 A: 회원국 / 체약당사국은 자국 저작권법에,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는 또 다른 예외 및 제한을 둬으로써 D(1) 조를 실현할 수 있다.

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

대안 A

1. 회원국 / 체약당사국은 C 조에 의해 제공되는 예외의 수혜자가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에 적용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(저작권) 예외의 향유가 금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.
2. 회원국 / 체약당사국은 자국 저작권법 하에서, C 조의 예외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, 그리고 이에 필요한 한도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허용함으로써 F(1) 조를 실현할 수 있다. 회원국 / 체약당사국은 수혜자의 제한과 예외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, 효과적이고, 즉각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발적 조치를 권리자가 취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.

국경을 넘어선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

[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, 회원국/체약당사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]

[국제 사무국은 이 기구/조약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과 관련된 익명적이고 집계된 데이터를 가능한 한 수집해야 한다.]

독서장애인 조약의 의미

- 장애인의 지식, 문화 접근권 확대 : 독서장애
인용 저작물의 국제 교류 활성화
- 장애인 지식, 문화접근권에 대한 국제적인 최
소 기준 설정
- 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 (공정이용) 확대
를 위한 단초

국내 저작권법 관련 조항

제 33 조 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)

-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**점자로 복제·배포**할 수 있다.
- ② **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**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(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**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**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**어문저작물을 녹음**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**전용 기록방식**으로 **복제·배포 또는 전송**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25>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**시각장애인 등의 범위**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내 저작권법 시행령 관련 조항

제 14 조 (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)

① 법 제 33 조 제 2 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9.7.22>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5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가.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

나. 점자도서관

다.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

2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
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·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

② 법 제 33 조 제 2 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. <신설 2009.7.22>

1. 점자로 나타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

2.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

3.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

4.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

[제목개정 2009.7.22]

제 15 조 (시각장애인 등의 범위) 법 제 33 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 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좋은 눈의 시력(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)이 0.2 이하인 사람

나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(注視點)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
2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